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우)2268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 (백석동) / 전화 : (032)565-6343 전송 : (032)565-6376

문서번호 : 한들 20190522-02

시행일자 : 2019. 05. 22.

수 신 : 지장물건, 영업권 보상
대상자 등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한들구역 지장물건, 영업권 보상협의 요청 및 보상금 수령통지(4차)

1. 귀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7-001호(2017.09.06.) 및 한들 20190214-01호(2019.02.14.), 한들 20190304-02호(2019.03.04.), 한들 20190329-01호(2019.03.29.)와 관련입니다.

3.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한 귀하 연고의 지장물건, 영업권 보상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당 조합과의 협의를 요청하오니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기간 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장물건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장물건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조합은 내부절차를 거쳐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동법시행령 42조에 따라 인천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의기간(4차) : 2019년 5월 23일(목) ~ 2019년 6월 10일(월)

나. 보상금지급내역 : “붙임 참조”

다.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보상금 수령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지방세완납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기관 통장사본
- 지장물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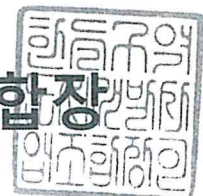
라. 보상금지급방법 :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마. 협의장소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붙 임 : 1. 지장물건, 영업권 보상금 지불조서 1부.

2. 한들구역 지장물건, 영업권 보상협의 및 보상금수령 안내(4차) 1부. 끝.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물건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이 종류	구조 및 규격 (영업상 상호)	소유 지분	수량	단위	보상금 산정액		대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	지번						단가	금액		성명	주소	권리관계
3416	서구 백석동	75-3	이전비보상	㈜해돋음	1/1	1	식	일괄	4,370,000	(주)해돋음 가설건축물 (강남주)			
3417	서구 백석동	75-3	가주1	강파이프,철재사각 프레임, 일부 차광막, 선라이트	1/1	270	m ²			㈜해돋음-가설건축물 (강남주)			
3418	서구 백석동	75-3	가주2	강파이프,철재사각 프레임, 일부 차광막, 선라이트	1/1	270	m ²			㈜해돋음-가설건축물 (강남주)			
3419	서구 백석동	75-3	가주3	강파이프,철재사각 프레임, 일부 차광막, 선라이트	1/1	480	m ²			㈜해돋음-가설건축물 (강남주)			
3420	서구 백석동	75-3	기타 집기비품		1/1	1	식			㈜해돋음-가설건축물 (강남주)			

한들구역 지장물건, 영업권 보상협의 및 보상금수령 안내(4차)

□ 사업개요

1. 사업의 명칭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3. 사업 위 시 : 인천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

1.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일체
2. 물건조서 등의 상세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협의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3. 협의 및 열람 장소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4. 보상시기
 - 협의 완료 후 보상서류 완비 시 지급
 - 보상금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어, 예산 부족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수령 시 구비서류
 - 가. 인감증명서 1통 (보상금 수령용,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나. 인감도장 (필히 소유자 본인 참석)
 - 다. 주민등록등본 1통
 - 라. 주민등록초본 1통
 - 마.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바. 금융기관 통장사본 (보상금 계좌입금)
 - 사. 지장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6. 보상방법
 - 현금보상하며, 보상가격은 "도시개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관" 등 관련법규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조합장추천 1인, 인천 광역시장추천 1인)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지불조서 참조)
 - 이의 제기된 지장물의 경우 실소유자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지불조서상의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등에 압류 및 지당권 등과 같은 제3인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말소 후에야 협의보상이 가능합니다.

※ 소유자가 사망자인 경우 먼저 상속절차(등기)를 이행하신 후 소유자의 해당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청구서류 접수처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 보상금 지급문의 : 032) 565 - 6343 (담당자 : 이승은)

▣ 한들구역 우편물(보상협의 및 보상금수령 통지 4차) 반송 목록

2018.06.05

연번	소유자 및 관계인	생년월일	소유 현황		송달 주소	반송사유
			동	지번	시도동	
1	㈜해뜸		백석동	75-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폐문부재